

소액해외송금업 도입과 해외송금시장의 변화

2017년 7월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도 일정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 해외송금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해외송금시장의 규제완화 및 핀테크 발전과 더불어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했거나 진입을 검토 중이며 인터넷전문은행도 해외송금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러한 시장경쟁 심화와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최근 해외송금시장의 동향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과 소액해외송금업제도 도입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 제고 및 국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당국은 핀테크 회사 등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도 '소액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동 개정내용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소액해외송금이란 거래 전당 미화 3천 달러 이내, 1인당 연간 누계 2만 달러 이내의 소액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당국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내용에 따르면 비금융회사도 최저자기자본 20억 원과 전산설비, 외환전문인력 요건, 부채비율 200% 이내 등 재무건전성 요건, 외환전산망 연결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다. 해외송금사업을 준비하는 소규모 핀테크 업체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국은 2017년 6월 규제완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관련 주요 요건



화 성격의 시행방안도 발표하였다.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 원 이하인 ‘소규모 전업자’의 경우 전산전문인력 고용은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최저자기자본도 10억 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2분기 이상 분기별 거래금액이 1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자기자본 20억 원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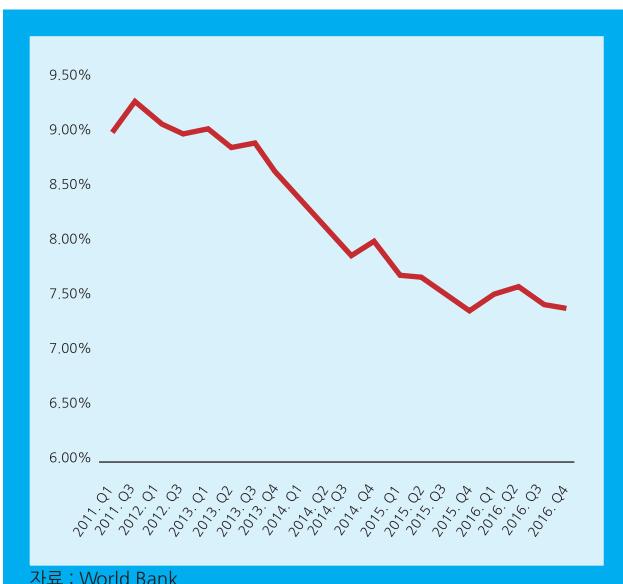
이번 신제도 도입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해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펀테크 업체도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담당자에 따르면 관련 법규들의 개정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해외송금의 중간 매개체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 가상화폐를 공식적인 화폐로서 그 법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해외송금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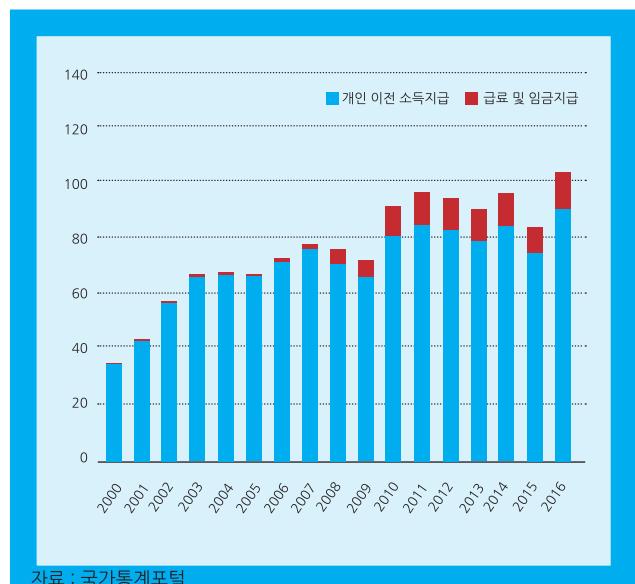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글로벌 개인해외송금 규모는 2015년 기준 5,820억 달러에 달하며 2000년 이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송금의 수수료율은 글로벌 송금시장의 발전과 경쟁심화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 말 글로벌 평균 9.3%에서 2016년 말 7.4%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외송금시장 규모도 확대되어 왔다. 해외 유학생 수요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장기 체류 외국인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인이전소득과 급여·임금지급 송금규모가 매우 커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개인이 해외로 송금한 금액을 의미하는 개인이전소득 지급은 2016년 89.7억 달러로 한국은행 통계집계 이후 최대를 기록했으며, 급료 및 임금 지급 역시 2016년 13.8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또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6년 말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153만 명으로 2006년 66만 명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최근 10년간 연평균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해외송금 수수료율 추이



우리나라의 해외송금 규모 추이



글로벌 송금중개회사 및 핀테크 업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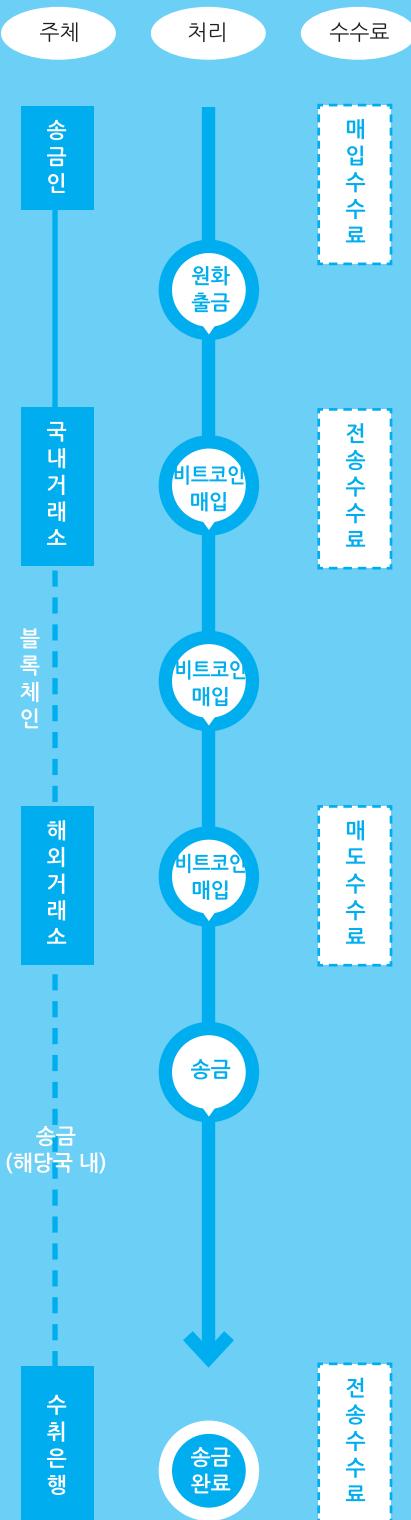
전 세계 각국에 광범위한 영업망을 구축하며 글로벌 송금시장의 주요 경쟁자로 성장해온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과 머니그램(MoneyGram) 등 글로벌 송금중개회사들은 송금처리의 신속성 등의 강점을 기반으로 국내은행들과의 업무제휴라는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해외송금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소액해외송금업계도 시행과 더불어 동 글로벌 송금중개회사들이 굳이 은행에만 의존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므로, 2017년 들어 국내 전자결제대행회사인 페이게이트와 신생 핀테크 기업 사이렉스페이 등 보다 다양한 영역의 국내 기업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며 영업망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핀테크 업계의 관점에서 보면 낮은 송금수수료와 이용 간편성, 송금처리의 신속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이 기반하여 다양한 해외송금모델 구축을 시도해오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핀테크 기업 머니택은 미국 페이팔이 2015년 약 1조 원을 주고 인수했던 해외송금IT기업 줌(Xoom)을 벤치마킹해 해외 통신사와 IT기업, 전당포 등 각국 전문송금업체와 업무제휴하여, 송금 후 30분 이내 찾을 수 있고, 중계수수료 부담도 적은 모바일 송금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비트코인을 이용해 수수료 부담이 적고 1시간 이내 처리되는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해 온 비트코인 송금업체들도 있다. 블루팬, 센트비, 모인, 빗썸 등이 그 예이며, 블루팬 등 비교적 기존 송금거래가 많은 회사들부터 자가자본 확충과 관련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소액해외송금업 등록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의 경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해킹 위험도 이슈화 되고 있어 향후 관련업계 및 당국의 대응동향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EB하나은행과 SK텔레콤이 합작해 만든 핀테크 업체 핀크와 코스탁등록 일본계 전자지급결제회사인 SBI엑시즈 등 다양한 성격의 핀테크 업체들도 해외송금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 은행권의 변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영업 개시(예정)와 더불어 은행 영업점 창구 대비 수수료 비용이 매우 저렴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시점에 모바일 간편해외송금 서비스를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며, 은행 영업점 창구 수수료 대비 1/10 수준의 매우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이용 편리성과 차별적인 수수료 강점을 주요 영업기반 중 하나로 활용하고자 하는 양상이다. 이미 영업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결제시스템망인 스위프트(SWIFT)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 흐름



은행권에서는 대구은행 등 많은 은행들이 모바일 플랫폼에서 해외송금수수료를 낮추고 쉽고 편리하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간편해외송금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스위프트망이 아닌 글로벌송금중개회사를 통한 신속한 송금 서비스 추진, 국가별로 현지회사 제휴 등을 통한 자체적인 송금망 구축, 비트코인 해외송금업체와의 제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모색 등 해외송금 서비스의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7년 5월 외국인 전용 모바일 플랫폼인 ‘글로벌S뱅크’를 통해 10개국 언어로 쉽게 이용 가능하며 수취인 계좌번호 없이도 10분 이내 돈을 받을 수 있는 ‘머니그램 특급송금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KEB하나은행은 송금 수취인의 거래은행이나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짧은 시간 내 송금할 수 있고 전신료가 없어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원큐 트랜스퍼(1Q Transfer)’ 송금 서비스를 2016년 2월 필리핀부터 개시해 2017년 5월 말 호주, 인도네시아, 러시아, 캐나다, 영국, 인도 등 15개 국가로 확대시켰다. 또 우리은행은 2017년 6월 인도네시아 현지 통신회사인 텔콤셀(Tel Komsel)과 인도샷(Indosat), XL 악시아타(Axiata), 스마트프렌(Smartfren)과 제휴하여 고객의 휴대폰 번호만 알면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통신회사의 고객모바일지갑에 송금금액을 입금시켜주는 인도네시아 송금 서비스를 도입했는데, 인도네시아어를 비롯한 5개 외국어로 제공되는 동 송금 서비스는 중개은행수수료가 없고 전체 송금비용도 1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사점과 전망

2017년 7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도입과 더불어 핀테크 회사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해외송금시장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등록요건에 의해 고객보호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과 정보보호시스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등 동 업종의 진입장벽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니기에, 단기간 내 많은 신생업체들이 해외송금시장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모델 관점에서 보면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계좌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등 비대면채널로 빠르고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도 매우 적은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주력하는 해외송금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규모 핀테크 회사들의 경우 제약적인 회사규모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등 특정고객층 중심의 영업에 주력하며 필리핀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전문성을 확보해 특화영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업체들의 시장 진입과 틈새시장 공략, 그리고 카카오뱅크 등 다양한 해외송금사업자들의 출현으로 향후 해외송금시장은 가격경쟁 심화와 수수료 하락, 송금처리시간 개선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점진적으로 발생할 전망이다. 사실상 해외송금업무를 독점해왔던 은행권은 영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핀테크 활용, 해외제휴 확대와 현지네트워크 구축, 송금채널의 편리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개선 등 업무개선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좀 더 넓게 보면, 소액해외송금업제도 도입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여러 시장변화들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은행권 해외송금업무의 전반적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